



규정

동원학보사 운영 규정

문서번호	TWP-C106
제정일자	2002. 03. 01.
개정일자	2017. 12. 18.
개정번호	5
페이지	1/6


목 차

- 제1장 총칙
- 제2장 조직
- 제3장 직무와 해임
- 제4장 재정
- 제5장 광고
- 제6장 보칙

부칙

작성부서	신문방송국	제정일자	2002. 03. 01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승 인
직 책	담 당	편집장	주간교수	학생처장	사무처장	총 장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C106	
		제정일자	2002. 03. 01.	
	동원학보사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7. 12. 18.	
		개정번호	5	페이지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 및 제호)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 학보사의 명칭은 “동원학보사(이하 “학보사”라 한다)”라 칭하고 신문의 제호는 “동원학보”라 칭한다.<개정 2017.03.29., 개정 2017.12.18.>

제2조(목적) 학보사는 이 대학교 부속기관으로서 동원학보 발간을 통하여 인성 중심의 열린 교육과 세계적인 직업 교육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된 보도를 함으로써 대학 언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7.03.29.,2017.12.18.>

제3조(사업) 학보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<개정 2017.12.18.>

- ① 동원학보의 발간
- ② 제2조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<개정 2017.12.18.>


제2장 조직

제4조(조직) 학보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.<개정 2017.12.18.>

- ① 발행인 겸 편집인 1명
- ② 주간 1명
- ③ 직원 1명<개정 2017.03.29.>
- ④ 편집장 1명
- ⑤ 기자 10명 이내
- ⑥ 수습기자 약간명

제5조(임원 임용) 학보사의 임원 임용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7.12.18.>

- ① 발행인 겸 편집인은 총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
- ② 주간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03.29., 2017.12.18.>
- ③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7.03.29.>
- ④ 편집장, 기자, 수습기자는 이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주간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03.29.>

	규정	문서번호	TWP-C106	
		제정일자	2002. 03. 01.	
	동원학보사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7. 12. 18..	
		개정번호	5	페이지

제3장 직무와 해임

제6조(임원의 직무) 학보사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17.12.18.>

- ① 총장은 학보사를 대표하고 사업 전반 업무를 지도·감독하며, 언론활동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.<개정 2017.09.15., 2017.12.18.>
- ② 주간은 발행인을 보좌하며 학보의 편집, 제작, 학보사의 운영 및 기자 활동 등을 지휘하며 지도한다.
- ③ 직원은 주간을 보좌하고, 학생 기자와 학보의 편집, 제작,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도한다.<개정 2017.03.29.>

제7조(학생임원의 직무) 편집장, 기자, 수습기자는 주간 및 직원 지도하에 학보 제작 및 기타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.<개정 2017.03.29.>

제8조(기자 해임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임원은 해임할 수 있다.<개정 2017.12.18.>

1. 기자가 학칙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<개정 2017.12.18.>
2. 이 대학교 및 학보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<개정 2017.12.18.>
3. 학보사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편집상 또는 기타 업무상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<개정 2017.03.29.,2017.12.18.>

제9조(기자 임기) 학생 기자의 임기 만료는 최종학년 2학기까지로 한다.


제4장 재정

제10조(재정) 학보사의 재정은 이 대학교 학생이 납부한 신문방송비와 기타 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교비 예산으로 충당한다.<개정 2017.03.29., 개정 2017.12.18.>

제11조(회계연도) 학보사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<개정 2017.03.29., 개정 2017.12.18.>

제12조(집행) 학보사의 재정 출납은 주간의 동의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나, 주간이 위임을 받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.<개정 2017.12.18.>

제5장 광고

	규정 동원학보사 운영 규정	문서번호	TWP-C106	
		제정일자	2002. 03. 01.	
	개정일자	2017. 12. 18.		
	개정번호	5	페이지	5/6

제13조(광고규격) 동원학보에 게재되는 광고 규격은 전면, 1/2, 1/3, 기타 사이즈로 구분한다.

제14조(광고 내용) ① 동원학보에 게재되는 광고는 학보의 목적에 맞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광고의 승인 여부는 의뢰를 받은 담당 직원을 거쳐 주간이 결정한다.<개정 2017.03.29., 2017.12.18.>

③ 광고의 내용은 교육, 시사 등 학생들의 필요를 우선으로 생각하며, 선정적인 것이나 비윤리적인 광고는 광고 대상에서 제외된다.<개정 2017.12.18.>

제15조(광고 위치) ① 전면 광고일 경우, 동원학보 마지막 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게재 면은 조정할 수 있다.

② 1/2, 1/3 광고의 경우, 표지 1면, 표지 2면, 표지 3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 게재할 수 있다.

제16조(광고료) ① 동원학보에 게재되는 광고는 다음 기준에 의해 광고료를 받는다. 단, 이 대학교 행정부서, 부속·부설 기관, 전공 등에서 시행하는 광고는 광고료를 받지 않는다.<개정 2017.03.29.>

면	색도	규격	단가(원)	비고
뒷면 (표지4면)	컬러	전면	800,000원	
		1/2면	500,000원	
내지	컬러	1/2면	300,000원	
	흑백	1/2면	250,000원	
	컬러	1/3면	200,000원	
	흑백	1/3면	150,000원	


제17조(광고료의 사용) ① 동원학보의 광고 수익은 학보사 운영 및 기타 사업에 사용한다.

② 동원학보의 광고 수익 중 일부는 가정 형편이 어렵고 성실한 이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7.03.29.,2017.12.18.>

제6장 보칙

]

제18조(보충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간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.

	규정		문서번호	TWP-C106
			제정일자	2002. 03. 01.
	동원학보사 운영 규정		개정일자	2017. 12. 18.
			개정번호	5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규정)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.